

중국 법제의 발전과 최근 변화

한 상 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중국의 경제 동향과 법률시장 현황
- II. 정치제도와 민족정책의 이해
 - 1. 중국공산당
 - 2. 다당합작 정당제도
 - 3. 정치협상제도
 - 4. 소수민족정책
- III. 입법제도
 - 1. 입법의 발전
 - 2. 입법체제
 - 3. 입법기관
- IV. 현행 법체계
 - 1. 중국법의 형식
 - 2. 법의 분야
 - 3. 외상투자기업법제
- V. 중국법제의 최근 변화
 - 1. 기업소득세법
 - 2. 기업파산법
 - 3. 노동계약법
 - 4. 반독점법

I. 중국의 경제 동향과 법률시장 현황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세계의 경제중심축이 변하고 있다.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중국은 2009년에도 8.7%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편, 대외직접투자도 433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¹⁾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에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시장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의 추이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0년 초에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감소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의 중요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 투자 프로젝트 에너지절감 평가, ② 중점 업계의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 지도의견, ③ 업계 에너지의 효과적 이용, ④ 기업의 에너지절감관리 및 목표책임평가 검사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밝히고 있다.²⁾ 향후 기술기준 제정, 에너지절감기술개조 시범프로젝트,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철강, 유색금속, 화학공업, 건축자재 등 에너지이용 중점 업종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준에 도달하고 에너지소모수준을 낮추도록 하였다.

중국 주민의 소비지출은 1999년에서 2008년까지 통계를 보면 연평균 12.1%씩 증가하였는데, 중국국제금융이 발표한 최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주민 소비지출은 세계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증가 현황과 중국의 소비규모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면 중국은 2년 안에 영국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소비국으로 올라서고, 5년 내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소비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한다.³⁾ 중국이 명실상부한 소비대국이 되면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분쟁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2009년 1월부터 11월 사이, 19개 국가(또는 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113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이미 조사가 끝난 103건 가운데 반덤핑은 67건, 세이프가드는 16건, 특별세이프가드는 7건이었다. 2010년

1) 대외직접투자는 동기 대비 6.5% 상승한 것이다. 또 중국의 대외건설영업액은 777억 달러로 동기 대비 37.3% 증가하였고, 대외노무협력의 영업액은 8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다. KorCham China 뉴스레터 2010.2.25.

2) KorCham China 뉴스레터 2010.1.15.

3) 대한상공회의소(북경사무소), 「차이나비즈니스 정보」, 제57호, 2009.12.16.

세계에서 신규 개시한 반덤핑건은 230~250건, 반보조금은 41건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며 또한 철강, 신발, 완구, 알루미늄, 타이어 등 비교우위 수출제품 중 동일한 제품이 다른 시장에서 무역구제조사를 받는 현상도 발생하였다.⁴⁾ 요컨대 2010년 중국의 대외무역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서 무역구제조업 무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전망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경제 상황을 둘러보고 귀국한 모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중국의 변화가 무서울 정도라며, 중국 법률시장이 앞으로 치열한 경쟁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법률시장에서는 294건의 기업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에너지, 광산 등 자원업종의 인수합병이 핫이슈로 되었다. 그리고 해외 인수합병이 성사된 것은 3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지만 거래액은 물경 160.99억 불로 동기 대비 90.1%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간 합병자금의 48.6%를 차지하는 것이다.⁵⁾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은 해마다 놀라운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II. 정치제도와 민족정책의 이해

1.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이다. 1921년에 창당되어 무장투쟁 방식을 통하여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82헌법 전문을 보면,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취득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당원이 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공산당의 당원은 6,600여만 명이다. 중국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에는 현재 350여만 개의 당조직이 있으며, 인민해방군과 인무장역량을 영도하는 것도 역시 중국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이상과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등을 국정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영도는 주로 정치, 사상, 조직에 관한 것으로써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 활동을 영도하고 또한 인민군대와 간부를 영도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4) KorCham China 뉴스레터 2009.12.22.

5) KorCham China 뉴스레터 2010.1.14.

당내 최고 영도기관은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이며, 당의 각급 위원회는 집단영도와 개인 분담으로 운영된다. 중대한 문제는 모두 관련 위원회에서 집단토론을 거쳐 결정되는데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때 각 부문 및 지방의 당 조직은 중앙에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이를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결의된다. 대표의 정원과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전국대표대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권력기관이다.

2. 다당합작 정당제도

중국의 정당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양당제 혹은 다당경쟁제와는 달리,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이다.⁶⁾ 다당합작제도는 중국공산당과 8개의 민주당파가 그 중심구조를 이룬다. 중국에 무슨 정당이 있는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는 중국공산당 외에 중국국민당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축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中國致公黨), 구삼학사(九三學社),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 정당이 있다. 이들을 보통 ‘민주당파’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이러한 정당들은 인민항일전쟁시기(1937~1945)와 인민해방전쟁시기(1946~1949)에 민족해방과 인민민주를 위한 투쟁 가운데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민주당파라고 부르며, 서로 연합하여 정치동맹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무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무당파(無黨派) 인사들이 있다. 통상 역량 있는 인사가 기존 정치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대개는 지식인들이다.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이며, 각 민주당파는 참정당의 역할을 한다. 중국인들의 뇌리에는 각 민주당파 혹은 무당파 인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반대당’이라든지 ‘야당’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⁷⁾ 중국의 지도급 인사들은 한국의 정치제도보다는 중국의 정치제도가 훨씬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6) 중국 정당제도의 기본특징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제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대원 외 14인 공저, 『현대 중국법 개론』, 2002, 86쪽.

7)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간에 형성된 협력의 기본방침은 ‘계속 공존하며(長期共存), 서로 감독하며(互相監督), 서로 특 털어놓고(肝膽相照), 영욕을 같이(榮辱與共)’ 하는 것이다.

3. 정치협상제도

중국의 정치제도 중 중국적 특색이 있는 제도는 바로 정치협상제도이다. 정치협상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각계의 대표, 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교포·대만 교포·해외 화교의 대표로써 구성된다. 전국위원회 대표의 임기는 5년이며, 매년 한 차례 전체회의가 열린다.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도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을 역임한 바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기구이다.

중국공산당 조직처럼 인민협상회의도 성·자치구·직할시를 비롯한 각급 행정단위에 하부 지방조직이 있다. '단결'과 '민주'라는 양대 가치를 지향하며 정치협상, 민주감독, 의정참정의 3대 직능을 이행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통상 민주당파 지도자, 무당파 대표 인사 등과 함께 정치협상회의를 가져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조율한다. 현재 제 10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은 2,238명인데, 이들 중 민주당파 혹은 무당파 인사는 각급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는 경우도 있다.

4. 소수민족정책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원일체적 다민족국가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을 모두 합쳐 봐야 중국 전체인구의 8%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매우 광활한 편이고, 일부 소수민족은 독립을 기도하고 있어서 중국 정세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소수민족정책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에서는 소수민족이 중국에서 독립해 스스로 독립적 국가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1949년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중국의 민족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정책으로 변경하여⁸⁾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민족자치지역의 행정단위는 원칙적으로 각 자치지방 지역의 대소와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치구는 성(省)과 동급이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자치지역으로서는 자치주와 자치현이 있다.⁹⁾ 민족자치

8) 김예경, 「중국의 소수민족 정의와 그 정치적 함의 -민족과 族群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102쪽 이하, 2007; 한상돈, 「중국 소수민족법제의 변통제도」, 1쪽에서 재인용, 『중국법연구』, 제12집, 2009.12.

지역의 자치기관으로서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있다. 각 자치기관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이 있다. 예컨대, 중국 동북3성 중의 하나인 길림성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데, 한문과 한글을 공용문자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어와 더불어 한국어¹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조선족 중국인이 맡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핵심요적인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들은 한족이 맡고 있어서, 법률로써 허용된 자치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특징을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¹¹⁾ 입법권도 있다. 입법의 권한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변통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혹은 법규가 그 소수민족 지역에 통용될 수 없는 경우, 자치조례 혹은 단행조례에 이를 변통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변통하여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각 관련법에 관련 법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부여하였었다. 예컨대 중국형법 제90조는 “민족자치지역은 본 법 규정을 전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 혹은 성(省)의 인민대표대회가 그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과 본 법의 규정과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변통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66조 제2항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징에 근거하여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대해 변통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혹은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에 위배해서는 안되며,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전문적으로 민족자치지방에 관해 규정한 것은 변통규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변통규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제한을 두고 있다.

9)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제2조 제2항은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한국어는 원래 조선어로 일컬어지다가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조선어라는 용어보다 한국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현재 중국에서 조선어는 북한말을 뜻하며, 한국어는 한국말을 가리킨다.

1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제19조.

Ⅲ. 입법제도

1. 입법의 발전

중국 입법의 발전은 1949년에 건국된 이래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949년부터 1978년 이전까지이다. 제2단계는 1979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이다. 즉 건국 후부터 30년까지가 제1단계이고,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고부터 30년까지가 제2단계이다. 제2단계 시기는 다시 다음과 같은 발전 단계를 밟게 된다. 문화대혁명의 암흑기를 지나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입법이 전면적으로 회복하는 시기이다. 1982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그 기초 위에 1983년부터 1992년까지는 계획상품경제하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배경으로 해서 입법이 실시되었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방향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발전관은 후진타오 주석이 주창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적인 국정에 맞춰 중국의 발전을 실천하고 국외의 발전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발전에 적응하자는 것이다.

2. 입법체제

중국은 1954년 처음으로 헌법을 반포한 이래 ‘중앙집권적 입법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그 후 1978년부터는 중앙입법과 더불어 지방입법이 강조되어 ‘집권적 분권 입법체제’가 형성되었다. 1982년 헌법에 제정된 후에는 중앙과 지방에 의한 집권적 분권 입법체제가 공고히 되었다.

입법체제의 제1요소는 입법주체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기관이 입법권을 향유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제2요소는 입법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주체는 어떠한 입법 직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입법체제의 제3요소는 입법관계 문제로서 각 입법주체와 주체간의 관계 및 각종 입법권한 사이의 권력관계에 관한 것이다.

모든 법률조문은 편→장→절→조→관(款)→항의 구조를 갖는다. 매 장은 2개 이상의 절이 있으며, 매 절은 2개 이상의 조가 있어야 한다. 장과 절에는 일반적으로 제목이 붙는다. 조는 법률의 기본단위이며 그 아래 관, 항이 있다. 우리나라와는 항(項)의 위치가 다르다.

3. 입법기관

중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의 대표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다.¹²⁾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생성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고,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 및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민족 역시 대표를 선출하여 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이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년 한차례 대회를 개최하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형사, 민사, 국가기구에 관한 법률 혹은 기본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국가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등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설기구로서 상무위원회가 있다.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해석의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결정·명령 등이 법률에 저촉될 경우 이를 폐지할 수 있다.¹³⁾ 상무위원회는 통상 2개월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갖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감독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중요 협정에 대한 비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민족, 법률, 재정경제, 교육과학과 문화위생, 의사, 화교, 내무사법, 환경과 자원보호, 농업과 농촌 등 9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현, 시, 향, 진에도 인민대표대회가 있고,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는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의 필요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¹⁴⁾ 성·자치구·직할시와 구(區)가 있는 시의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이하의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임기는 3년이다.

1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조.

13)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행정법규가 헌법 혹은 법률에 저촉될 경우, 이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14) 이렇게 해서 제정된 지방성 법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으면 시행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문서등록(備案)해야 한다.

IV. 현행 법체계

1. 중국법의 형식

중국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법의 형식은 우리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형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법규와 행정규장에 관한 것이다. 행정법규는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하고 반포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각종 규범을 가르킨다. 일반적으로 조례, 판법, 규칙, 규정, 세칙, 통지, 해석 등 다양한 이름이 붙는다. 행정법규는 그 분량이 방대해서 각 법규 명칭도 조례, 규정, 판법, 결정, 통고, 명령, 지시, 통칙, 규칙, 세칙 등 다양하게 사용되다가 1987년 국무원 관공청이 공포한 <행정법규 제정절차 잠행조례>에 따라 조례, 규정, 판법 3가지 명칭만 부치도록 통일하였다. 행정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며,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흡사하다. 국무원 산하의 각부, 각위원회가 반포하는 결정, 명령, 지시, 규장 등도 규범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행정규장이라고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각부에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한 명령, 즉 직권명령을 제정하여 부령(部令)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행정규장이라고 부른다.

둘째, 지방법규와 지방규장에 관한 것이다. 지방법규는 성·자치구·직할시 등 성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있는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도 지방법규에 속한다. 주로 조례, 규정, 판법, 규칙, 실시세칙 등의 이름이 붙여진다. 지방법규는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에 저속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반포하는 결의, 명령, 결정을 지방규장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중국 법형식의 하나이다.

셋째,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관한 것이다. 자치조례는 자치지역의 헌법, 단행조례는 자치지역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민족구역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지방법규와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자치지역 인민정부는 또한 행정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와 자치현의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상일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의 분야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법과 상법을 나누지 않고 민상법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체계는 총칙, 물권(소유권 포함), 채권(계약법 포함), 인신권, 친족, 상속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중국 민법도 사유재산권신성불가침원칙, 사법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¹⁵⁾ 상법에는 회사법(公司法), 어음법(票据法), 해상법, 보험법, 파산법 등 단행법률이 있으나 상법전은 없다.

소송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 분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처럼 실체법과 절차법을 한데 묶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법은 사회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개념정의가 되고 있는데 시장주체법, 거시조정법, 시장운행법, 경제감독법으로 분류된다. 상법 분야 법률과 교차되는 점이 많다. 한국에서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과 함께 사회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은 독립적인 법률 영역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경제법도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대량의 법률과 법규, 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외상투자기업법제

중국 기업법체계에서 외상투자기업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투자자들이 중국에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활동을 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외상투자기업 관련법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9년 무렵의 중국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자본이었다. 따라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1979년에 제정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다. 이 법은 <합자기업법>이라 약칭해서 부르기도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기업법이다. 중국은 이 때로부터 소유주체를 기준으로 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2원제 입법방식을 취하였고, 중국기업법제는 2중 구조로 틀이 잡혀 나갔다.¹⁶⁾

15) 1986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3조는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당사자 평등의 원칙, 자원·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 한상돈,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입법체계 검토」, 『영산법률논총』, 제3권 제2호, 36쪽, 2006.12.

(1)삼자기업법

<합자기업법>,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을 통칭하여 삼자기업법이라 부른다. 여기서 <외자기업법>은 중국에서 보통 <독자기업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합자기업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hinese-Foreign Equity Joint Ventures)은 1979년 7월 1일 제정되었다. 일반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지만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하고 또 외상투자법제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였다.¹⁷⁾ 합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중국측과 공동투자, 공동경영하고 그 이윤과 책임은 지분에 의해 배분되는 중국의 기업이다.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고, 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합자기업법>은 1990년 4월 4일 제1차 개정되었으며, 2001년 3월 15일 제2차 개정안이 공포되었다.¹⁸⁾ <합자기업법>은 중국 내자기업 중 전형적인 기업형태가 없는 가운데 유한책임의 회사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기업 설립부터 등록자본금, 출자시기, 내부조직 등 모든 과정을 중국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설정해 나가야 했다. 후에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외상투자기업법 체계가 점차 형성되고, <회사법> 등 기업관련 입법이 계속되면서 중국 기업법 체계는 발전되어 갔다.

합작기업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hinese-Foreign Contractual Joint Ventures)은 1980년대 초기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그 후 중국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¹⁹⁾ 합작기업은 외국투자자와 중국측 당사자가 합작조건, 손익과 책임의 분담, 경영방식, 기업청산시 재산귀속 등을 서로 약정한 계약에 의하여 설립된다. 쌍방의 기업경영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전적으로 계약에 의하는 계약식 합영기업이다. <합작기업법>은 1988년 4월 13일 통과되었고,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17) 중국에서 기본법은 형사기본법, 민사기본법, 국가기구기본법, 기타 기본법 등 4가지로 분류하는데, 외상투자기업법은 병역법, 교육법, 노동조합법,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등과 함께 기타 기본법 범주에 속한다. 한상돈,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입법체계 검토」, 『영산법률논총』, 제3권 제2호, 37쪽, 2006.12.

18) 외자기업법, 합작기업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이루어졌지만 합자기업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만큼 중국 입법기관에서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개정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이관하였다.

19) 甘培忠, 『企業法新論』, 북경대학출판사, 242쪽 이하, 2000년.

외자기업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Capital Enterprises)은 처음에 지방입법을 통하여 시도되었다.²⁰⁾ 5년 정도의 시험기를 지나 1986년 4월 12일 국가 입법기관에서 <외자기업법>이 제정되었고²¹⁾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개정되었다.

(2)법의 개정과 관련법의 제정

외상투자기업법에 대한 개정작업은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는데, 주로 개정된 것은²²⁾ 첫째, 외환평형 조항을 취소하여 외자기업(합작기업)의 외환사항은 국가 외환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외자기업(합작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 혹은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수출업적 요구 조항을 개정하여 제품의 수출 혹은 선진기술을 사용하는 외자기업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의 수출 혹은 선진기술을 사용하는 생산형 합작기업을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기업생산계획 등록조항을 삭제하여 외상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비준된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며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활동에 관련되는 섭외경제계약법,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외상투자기업의 등기, 회계, 노동, 임금, 보험, 복지, 노동조합, 외환 등 행정법규도 속속 제정되었다. 입법기관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외상투자기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를 중국에서는 복선제[雙軌制] 입법방식이라 부른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 해서 외상투자기업관련 법령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어 1979년부터 1999년까지 30년 동안 각급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법규와 규장은 1489건에 이르게 되었다.²³⁾ 워낙 급격하게 법체계가 형성되는 바람에 법규범 간 서로 충돌되는 경우도 많았고 모순이 있는 것도 적지 않았다.

20) 1980년 8월 26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경제특구조례”를 비준하여 광동성의 경제특구에서 외자기업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참고, 甘培忠, 『企業法新論』, 북경대학출판사, 263쪽, 2000년.

21) 본 법 제2조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의를 “중국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외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이라고도 불린다.

22) 자세한 한상돈, 「중국 외상투자기업법의 입법체계 검토」, 『영산법률논총』, 제3권 제2호, 38쪽, 2006.12.

23) 이옥자, 「중국외자유치의 현황과 전망」, 『밖에서 본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 제8회 한중법학회 국제학술회의록, 36쪽, 2002년; 강효백 편저, 『중국법통론』, 경희대학교출판국, 274쪽에서 인용, 2005년.

V. 중국법제의 최근 변화

1. 기업소득세법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업소득세는 33%였다.²⁴⁾ 외상투자기업은 과세에 있어서 2년 면제, 3년 감액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 재투자 시 환급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에 있었다.

또 실제적으로 중국 내 경제특구에 설립된 외자기업,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1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았고, 연해경제개발구,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가 위치한 도시의 다른 지역에 설립된 생산성 외자기업은 24%의 세율을 우대받았다.²⁵⁾ 반면에 중국의 국내기업은 발생한 이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외자기업에 대해 10%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어서 불만과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업소득법>은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게 동일한 25%의 세율을 정함으로써 중국 국내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같은 세율은 국제평균수준에 비하여 낮은 것이라고 중국에서는 설명하지만,²⁶⁾ 한국투자기업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5%의 명목세율을 규정하였지만 영리수준이 낮은 소형기업은 20%, 중국이 필요로하는 하이테크분야에 대해서는 1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기업의 적절하게 대응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파산법

중국은 1986년에 제정된 <기업파산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기업파산법>을 제정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²⁷⁾ 현행 <기업파산법>은

24) 명목세율 33%는 30%의 기업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로 이루어진다.

25) 김성화,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외자기업의 대응방안」,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68쪽, 2007.8.31.

26) 기업소득세제를 취하는 전 세계 159개 국가의 평균 세율은 28.6%이며, 중국 주변의 18개 국의 평균세율은 26.7%에 비해 낮은 것이라고 한다.

27)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제정으로 채권자, 채무자, 소비자, 투자자, 주주, 근로자, 정부 등을 막론하고 수많은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의 교역에 대한 충분한 보장과 보호수단이 있게 된다고 중국에서는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김성균, 「중국 기업파산법의 제정과 특색」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134쪽, 2007.8.31.

파산에 있어서 실체적인 규정과 절차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고, 회사정리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 종래 기업파산의 적용대상을 국유기업에 한정하였던 것을 확대하였다. 즉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법인형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기구까지 확대하였다.

현행 <기업파산법>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는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인제도를 신설하였다. 채권자회의는 관리인이 적법하거나 공정하게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타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관리인은 또 청산팀 혹은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를 맡을 수 있으며, 법원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영업자격이 있는 자를 관리인을 맡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상급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행 <기업파산법>은 상급 주관기관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채무자가 회사정리 혹은 화의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도 회사정리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담보권과 근로자 채권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정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을 하였으며, 국제도산규정을 신설하였다.

3.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한국투자기업들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데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2007년 6월 <노동계약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부터는 노무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현행 <노동계약법>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⁹⁾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³⁰⁾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업무완성기한 노동계약 등으로 구분하였다.

28)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22조.

29) 다만 파출부와 같이 비전일제 노동자는 구두 계약을 허용한다.

30) 필요적 기재사항은 노동계약 기한, 작업내용과 작업지점, 작업시간과 휴식 및 휴가, 노동보수, 사회보험,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위해방지 등이다.

고용단위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액의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만약 임금을 연체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배상금을 고용단위가 지급해야 한다. 또 고용단위가 폭력, 협박 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혹은 고용단위가 규장을 위반하여 근무지휘를 하거나 위협한 작업을 강제하면³¹⁾ 노동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전에 고용단위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고용단위가 노동자 모집 시 노동자의 신분증과 증명문건을 압류하거나, 근로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타 명목으로 재물을 수취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4. 반독점법

<반독점법>은 2007년 8월 30일 제정되었고,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은 1993년에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과 함께 중국경쟁법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독점협약(Monopoly Agreement)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협의, 결정, 기타 협동행위’ 일 경우 이는 금지된다.³²⁾ 독점협약에서 수직적 형태의 독점행위는 금지되며,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했다는 점이다.³³⁾ 즉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독점협약의 관련정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위법에 따른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무원이 정하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반드시 사전에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반독점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여부,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여건, 다른 경영자의 당해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의 의존도, 다른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

31) 이러한 경우, 고용단위는 행정처벌을 받고, 만약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면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

32) 여기에는 ①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생산수량 또는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③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④ 신기술·신설비 구입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⑤ 연합하여 거래를 저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33)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46조.

등이 고려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로는 불공정하게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하게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7가지가 있다.

<반독점법>은 상당한 위력이 있는 법률이다. 왜냐하면 <노동계약법>이나 <기업소득세법>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반독점법>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집행기구는 언제라도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강제조사권이 부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협의내용·회계장부·업무서한·전자데이터 등에 대한 열람·복사권도 있다. 또한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은행계좌 조회도 법원의 허가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에, 중국 <반독점법>이 위와 같이 강력한 조사권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